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5월 2일, 송옥주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5월 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송옥주의원)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음.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군부대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관리양곡 관리 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현행법은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할 뿐,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이 없음.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를 통하여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을 고시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시설, 무료급식단체 등에게는 해당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상황임.

개정안은 정부관리양곡의 할인판매 또는 무상제공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대상에 따라 다른 것으로 보임.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재난피해자 등은 특별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대상인데, 이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들 중 일부에게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판매함.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할인판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며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둘째, 학교·군부대·교도소 등 공공급식을 시행하는 시설의 경우 정부관리양곡을 군·관수용과 학교급식용으로 구입하는 시설로, 현재 할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상임.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는 새로이 할인판매나 무상제공의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을 통하여 ① 현재 이루어지는 할인판매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대량의 양곡수요를 가지는 공공급식 시설 등을 통하여 재고량 감소와 관리비용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보임.

다만, 정부관리양곡이 정부가 예산을 통하여 매입·수입한 양곡인 점을 고려하면, 무상·할인 제공 대상을 규정하는 데 있어 해당 대상의 공공성 여부를 엄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재 정부관리양곡 판매수입은 현재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사업인 “미곡판매수입(41-411)”으로 반영되는데, 무상·할인 제공에 따라 해당 세입예산이 감소하여 양곡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정

부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2025년도 예산에서 미곡관매수입 사업의 세입예산은 4,741억 8,100만원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2조 7,925억 4,200만원)의 17.0%에 해당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 중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할인 제공의 대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사항으로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정이유

정부관리양곡의 판매수입이 세입예산 재원인 점, 세입예산 재원을 활용하는 지원제도는 국회의 재정통제 측면에서 가급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할인 제공의 대상을 조정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정부관리양곡의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대상을 현재의 제공 대상을 고려하여 추가 또는 삭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3).
- 나. 2025년 8월 26일에 공포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8월 27일 시행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6년 8월 27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함(안 부칙).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3을 제9조의5로 하고, 안 제9조의5(종전의 안 제9조의3)의 제목 중 “무상·할인”을 “할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상”을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로, “기관·단체에”를 “시설·단체의 장에게”로, “무상 또는 할인하여”를 “할인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공”을 “할인 제공”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구청장”으로 한다.

안 부칙 중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2026년 8월 27일”로 한
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u>제9조의3(정부관리양곡의 무상·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u>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u>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u> ①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설·단체의 장에게-----할인하여----- ---. 1.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신 설>

3.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
른 재난으로 피
해를 입은 자

4. 학교 · 군부대 ·
교도소 등 공공
급식을 시행하는
기관 · 단체

5.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기관 ·
단체

3. 「한부모가족지
원법」 제5조 또
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개정안 제3호와
같음)

<삭 제>

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
치시장 · 특별자
치도지사 · 시장
· 군수 또는 구
청장(자치구의

		<u>구청장을 말한다.</u> <u>이하 같다)</u> <u>이 인정하는 단</u> <u>체</u>
	<u>② 제1항에 따른</u> <u>정부관리양곡 제공</u> <u>대상의 구체적인</u> <u>기준·요건 및 방</u> <u>법·절차 등에 필</u> <u>요한 사항은 대통</u> <u>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② -----</u> <u>-----할인</u> <u>제공-----</u> <u>-----</u> <u>-----</u> <u>-----</u> <u>-----</u>
		<u>③ 농림축산식품부</u> <u>장관은 제1항에 따</u> <u>른 때 회계연도의</u> <u>정부관리양곡 제공</u> <u>내역을 다음 연도</u> <u>5월 31일까지 국</u> <u>회 소관 상임위원</u> <u>회에 보고하여야</u> <u>한다.</u>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양곡 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현행과 같 음)	제19조(양곡가공업의 신고) ① ----- ----- ----- ----- -----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u>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u>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략)	부칙 <u>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u>2026년 8월 27일</u>
---	--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단체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할인 제공 대상의 구체적인 요건과

할인 제공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의 정부관리양곡 제공 내역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5(정부관리양곡의 할인 제공)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활이 어려운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설·단체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u>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u> <u>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u> <u>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u> <u>5.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u>

